

전라북도 학생인권심의위원회

결 정

사 건 명 15-학인-00042 폭력 등으로 인한 인권침해
신 청 인 ○○○(피해자의 어머니)
피 해 자 □□□(●●●●●초등학교 2학년 ○반 학생)
피 신 청 인 ■■■(●●●●●초등학교 2학년 ○반 담임교사)

주 문

1. 전라북도교육감에게,

가. 피신청인은 피해자와 ●●●●●초등학교 2학년 ○반 학생들의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및 인격권을 침해하였으므로, 피신청인에 대한 신분상 처분을 할 것을 권고한다.

나. 피신청인의 행위와 유사한 사례가 다른 학교에서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한 대책을 수립하여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2. ●●●●●초등학교장에게

가. 교사의 체벌에 대한 낮은 인권감수성에 기인하여, 위와 같은

체벌이 발생하고 학생들의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및 인격권을 침해하였으므로, 학교 구성원들의 체벌에 대한 인권감수성 향상과 학생인권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위해 인권교육을 실시하고, 인권우호적인 학교문화 조성을 위한 실천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나. 폭력에 노출된 피해자 및 해당 반 학생들에게 심리치료 등의 특별 조치를 취하여 피해가 회복될 수 있도록 권고한다.

이 유

1. 구제신청의 개요

가. 접수일자 : 2015. 8. 5.(수)

나. 신청인 : ○○○(피해자의 어머니)

다. 피해자 : □□□(●●●●●초등학교 2학년 ○반 학생)

라. 피신청인 : ■■■(●●●●●초등학교 2학년 ○반 담임교사)

마. 신청요지 : 2015. 7. 24.(금) ●●●●●초등학교 2학년 ○반 교실에서, 피신청인이 피해자의 머리를 붙잡아 흔들고, 같은 반 ○○○ 학생 등 여러 명의 학생들에게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흔들게 지시하였다.

2. 관련 규정

별지와 같다.

3. 당사자 및 관계인의 주장

가. 신청인 및 피해자의 주장

신청요지와 같다.

나. 피신청인의 주장

1) 피해자는 화가 나면 습관적으로 아이들 머리를 잡고 세계 흔드는 버릇이 있다. 2015. 7. 24.(금) 3교시 끝나고 쉬는 시간에, 2학년 2반 교실 1분단과 2분단 사이 뒤쪽에 아이들이 모여 있었는데, 피해자가 ○○○ 학생(부반장)의 머리를 잡고 흔들기에, 얼른 달려가 피해자를 뒤에서 안아서 잡고 뜯어냈으며, 이 과정에서 피해자가 발버둥을 치면서 손을 흔들어서 본인의 뺨을 긁어 상처가 생겼고, 이에 감정적으로 흥분이 되고 화가 나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양손으로 잡고 흔들었다.

2) 피해자의 머리채를 붙잡고 흔들다가 피해자의 머리와 몸이 벽에 부딪친 상황은 아니었다. 당시 1분단과 2분단 옆에 있는 피해자를 1분단 옆으로 끌고 오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가 벽에 부딪친 것 같지는 않다.

3) 당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 때 다른 학생들이 주변으로 몰려왔고, 그 상황에서 본인이 피해자에게 “너도 그럼 한번 똑같이 당해봐라”라고 말을 하였으며, 다른 학생들에게 “잡아봐라”라고 했더니 ○○○ 학생과 몇몇 학생들이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흔들었다. 이후 학생들에게 “떨어져, 떨어져” 하면서 학생들을 말리자, 학생들이 피해

자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는 상황이 끝났다.

4) 당시 2학년 ○반의 학생들 중 몇 명의 학생이 피해자의 머리채를 붙잡고 흔들었는지는 잘 모르겠고, ○○○○ 학생 외에 몇 명 정도였던 것으로 보인다. 당시 피해자는 벽 쪽에 있었고, 본인과 다른 학생들이 반원형을 그리면서 피해자를 둘러싸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의 머리를 잡을 수 있는 크기로 반원형을 만들 정도여서 많은 학생들이 피해자의 머리를 잡은 것은 아니다.

5) 2015. 7. 24.(금) 2학년 ○반 학생들에게 피해자의 머리채를 붙잡고 흔들라는 부적절한 지시를 한 이유는, 똑같은 행동을 반복하는 피해자의 행동을 수정하려고 했던 목적이었던 것 같다.

6) 학생에게 다른 학생의 머리를 잡고 흔들라고 하는 지시는 교육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당시 피해자가 손으로 긁어 뺨이 따끔했는데, 다른 학생들이 본인을 보고 “선생님 피나요, 피나요,” 라고 말을 해서 너무 화가 났다. 당시 상황이 망신스럽고, ‘이 나이에 내가 이런 쪼그만 애한테 당해서 이러나’하는 자괴감을 느껴 비교육적으로 행동했던 것 같다.

7)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흔들 다른 학생들의 반응은 그냥 장난스럽게 했던 것 같고, 세게 잡았는지 아닌지는 알지 못한다. 그 후 다른 학생들에게 당시 상황과 감정에 대해 물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때 학생들의 기분이 어땠는지 알지 못한다.

8) 피해자는 3월부터 다른 학생들을 괴롭히는 행동을 하여, 다른 학부모가 민원을 제기하였고, 이를 해결하고자 피해자의 학부모님에게 문자메세지를 보냈지만 피해자의 학부모가 문자에 대해 답변이 없어

서 진전이 없었다. 피해자는 1학년 때는 학생들을 꼬집는 행동을 많이 했고, 2학년 때는 다른 학생 머리를 잡아 뜯는 행동을 많이 했다.

9) 피해자의 문제행동을 발견한 다음에 피해자의 학부모와 상담을 하지 못했는데, 3월말~4월초 상담주간에도 학부모가 오지 않았고, 학부모가 응하지 않아서 상담을 하지 못하였다.

다. 참고인들의 주장

1) ○○○(○○○ 학생의 어머니)의 주장

아들은 평소에 학교에서 일어난 일을 말하는 것을 좋아해서, 이런 저런 이야기를 자세히 많이 하는데, 피해자 사건도 아들이 이야기 해줘서 알았고, 아들이 이야기 해준 당시 상황을 신청인에게 이야기 해주었다.

당시 피신청인이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흔든 후에, “피해자한테 한번이라도 머리 잡힌 애들 다 나와라”고 말해서 애들이 나왔는데, 5~6명 빼고 다 나왔다고 했다. 피신청인이 “한 줄로 서서 똑같이 머리 흔들고 들어가라”고 학생들에게 말해서, 아이들이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흔들고 들어갔는데, 머리를 세게 잡아 흔든 애들도 있었다고 한다. 아들도 피해자의 머리를 몇 가닥 잡았었는데, 그때 “너무 놀랐다”라고 이야기하였다.

아들 외에 피해자의 머리를 흔든 학생들이 누군지는 잘 모른다.

2) ○○○(○○○ 학생의 어머니)의 주장

2015. 7. 24. 피해자가 아들의 머리를 잡아 흔든 사건에 대하여

알고 있다. 당시 피해자가 사탕(캐러멜)을 반의 다른 친구한테 줬는데, 그 친구가 본인이 먹지 않고 아들한테 주었고, 아들이 이것을 받아서 먹자, 피해자이 화를 내면서 “네 거 아냐”라고 말하며 아들의 머리를 잡아서 사건이 일어난 것으로 알고 있다.

평소에도 아들이 날마다 피해자한테 꼬집혀 오는 경우가 많았고, 피해자가 수업시간에 이상한 소리를 내는 등 수업을 방해한다는 이야기도 들었다.

3) ○○○(○○○ 학생의 어머니)의 주장

아들이 평소에 피해자에게 괴롭힘을 많이 당하고 있었고, 피해자가 3월말에서 4월초부터, 주로 꼬집거나 머리를 잡아 흔드는 등의 방법으로 아들을 괴롭혀서 아들이 많이 힘들어했다. 6월에 제비뽑기로 짝을 정했는데, 피해자와 짝이 되자 짝을 하기 싫다고 피신청인한테 이야기했으나, 피신청인이 조금만 참자고 해서 참았지만, 짝을 하는 2~3주 동안 아들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 보건소에 다니면서 언어 심리치료를 받았다. 피해자는 보건소까지 따라와서 아들의 머리를 잡고 괴롭힌 적도 있다.

멀리서 아들이 피해자의 얼굴만 쳐다봐도 와서 때렸고, 6월에는 손톱자국이 나는 등 아들의 얼굴에 상처가 많이 생겨 계속 밴드를 붙이고 다녔다. 애들이 아직 어려서 참고 있었었는데, 피해자의 문제행동에 대한 심리치료를 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

4. 인정사실 및 판단

가. 인정사실

피신청인과 신청인의 주장, 전화통화조사를 통한 학부모들의 주장 및 관련 서류 등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2015. 7. 24.(금) 3교시 끝나고 쉬는 시간에 ○○○○○초등학교 2학년 ○반 교실에서, ■■■ 학생의 머리를 잡아 흔드는 피해자를 말리던 피신청인은, 피해자의 머리채를 양손으로 잡고 흔들었다.

2) 피신청인은 위 1)항의 행위를 한 다음에, 피해자에게 “너도 그럼 한번 똑같이 당해봐라”고 말하였다.

3) 피신청인은 위 1)항 및 2)항의 행위를 한 후, 위 학급의 다른 학생들에게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라고 하였으며, 이에 따라 ○○○ 학생 외 여러 명의 학생들이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었다.

4) 피신청인은 위 학급의 다른 학생들에게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게 한 후, 해당 학급의 학생들에 대하여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다.

5) 2015. 7. 24.(금) 피해자는, ‘■■■■ 정형외과의원’에서 ‘두개 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진단’을 받았으며, 위 병원 의사의 소견에 따르면,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좌측 두부 좌상에 의한 부종과 찰과상이 다발성으로 있고, 향후 치료에 있어서 병발증 발생이 가능하며, 예상치료기간은 14일이다.

나. 판단

1) 관련 규정

「대한민국 헌법」 제10조, 제12조, 「교육기본법」 제12조 제1항 및 「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4 등의 관련 규정에 따르면, 학생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고,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 존재이며, 신체적·정신적으로 성장해 가고 있는 우리 사회 구성원으로서 건강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특별한 보호와 배려를 받는 존재이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는 ‘학생을 지도할 때에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훈육·훈계 등의 방법으로 하되, 도구, 신체 등을 이용하여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방법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전라북도 학생인권조례」 제9조는 ‘학생은 따돌림, 집단 괴롭힘, 성폭력 등 모든 물리적·언어적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가 있음’을 확인하고 있으며, ●●●●●초등학교 생활규정 제41조 역시 ‘학교교육과정에서 직접적·간접적 차별을 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들을 살펴보았을 때, 학교에서 교사가 학생을 지도하면서 어떠한 경우에도 차별은 허용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2)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및 인격권 침해에 대하여

위 인정사실 1)항, 2)항, 3)항, 4)항의 행위에 대하여 검토하면, 피신청인이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흔드는 차별 행위(1차)를 하고, 다른 학생들에게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도록 지시하는 차별행위(2차)를 한 것이 인정된다.

피신청인의 지시에 따라 몇 명의 학생들이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흔들었는지는 명확하지 않다(학부모들은 이 사건이 초등학교 2학년 학생에게 좋지 않은 기억이어서, 학생들에게 다시 그 상황을 떠올리도록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며 이에 대한 답변을 거부하고 있으므로, 정확한 인원을 확인하는 것이 불가능함). 다만, 피신청인의 진술 및 피해자, 참고인들의 주장을 살펴보면 2인 이상의 다수가 행했던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피신청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신체에 직접적인 가해를 하고, 또한 학생들에게 피해자의 신체에 직접적인 가해를 하도록 지시한 것이므로, 피해자의 신체의 자유 및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침해한 것이 명백하다. 또한, 이러한 체벌을 당한 피해자는 심한 수치심 및 모욕 등을 느끼게 되는 것이 당연하므로, 피해자의 인격권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더불어 피신청인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았던 몇 명의 학생들과 이를 목격하였던 위 학교 2학년 ○반에 재학 중인 다른 학생들도 피신청인의 행위로 인하여 폭력에 노출되었으므로, 위와 같은 피신청인의 행위는 위 학급 학생들의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피신청인은, 다른 친구의 머리채를 잡은 피해자의 행위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손톱에 긁혀 자신의 얼굴에 피가 나자, 화도 나고 흥분된 상태에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다른 학생들에게도 똑같이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도록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

는데, 피해자 및 피신청인의 지시에 따랐던 학생들이 초등학교 2학년으로 저학년(대체적으로 9세가량)이라는 점과 피신청인의 행위 방식 등을 고려했을 때, 위와 같은 피신청인의 행위는 중대한 인권침해로 보이므로, 피신청인에 대한 신분상 처분은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평소 피해학생이 통제하기 어려운 상태 및 행동 등을 하였던 점을 감안하여, 이를 고려하여 피신청인에 대한 신분상 처분을 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된다.

3) 체벌에 대한 인권감수성 부재

피신청인은, 교사가 학생 생활 교육을 함에 있어 체벌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하여야 함에도, 피해자에 대한 생활교육을 하면서 체벌이라는 방법을 사용하였고, 또한, 다른 학생들에게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도록 지시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

이러한 행위는 피신청인이 평소 체벌에 대한 인권감수성이 낮은 상태에서, 학생들을 지도하면서 자신의 감정을 주체하지 못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평소 교사들이 갖고 있는 체벌에 대한 낮은 인권감수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특별한 대책을 수립하는 것이, 위와 같은 일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위와 같은 이유로 「전라북도 학생인권조례」 제49조 제2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5. 9. 24.

전라북도 학생인권심의위원회 위원장 송기춘 (서명)

[별지] 관련 규정

가. 「대한민국 헌법」

제10조(인간의 존엄성과 기본적 인권의 보장)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제12조(신체의 자유, 자백의 증거능력) ①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

나. 「교육기본법」

제12조(학습자) ① 학생을 포함한 학습자의 기본적 인권은 학교교육 또는 사회교육의 과정에서 존중되고 보호된다.

다. 「초·중등교육법」

제18조(학생의 징계) ①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한 경우에는 법령과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징계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지도할 수 있다. 다만, 의무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은 퇴학시킬 수 없다

② 학교의 장은 학생을 징계하려면 그 학생이나 보호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는 등 적절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18조의4(학생의 인권보장) 학교의 설립자·경영자와 학교의 장은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에 명시된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여야 한다.

라.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학생의 징계 등) ⑧ 학교의 장은 법 제18조제1항 본문에 따라 지도를 할 때에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훈육·훈계 등의 방법으로 하되, 도구, 신체 등을 이용하여 학생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방법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마. 「전라북도 학생인권조례」

제3조(학생의 인권 보장 원칙) ① 학생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제9조(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① 학생은 따돌림, 집단 괴롭힘, 성폭력 등 모든 물리적·언어적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가진다.

② 학교교육과정에서 차별은 금지된다.

제49조(학생인권침해 구제신청과 조치) ① 학생이 인권을 침해당하였거나 침해당할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학생을 비롯하여 누구든지 인권옹호관에게 그에 관한 구제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구제신청을 받은 인권옹호관은 사건에 대하여 조사한 후 도교육청, 교육지원청, 학교와 교직원에 대한 시정권고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인권옹호관은 그 청구를 각하할 수 있다.

1. 제삼자가 한 조사청구에 대해 피해자가 조사를 원하지 않는 것이 명백한 경우

2. 조사나 상담이 청구될 당시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에 관하여 법원의 재판, 수사기관의 수사 또는 그 밖에 법령에 따른 권리구제절차나 조정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종결된 경우

3. 조사청구가 익명 또는 가명으로 제출된 경우

4. 그 밖에 인권옹호관이 상담 및 조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④ 인권옹호관이 제2항의 조치를 취한 경우에는 이를 즉시 교육감에게 통보하고, 그 요지를 공표하여야 한다.

⑤ 인권옹호관으로부터 시정 권고를 받은 도교육청, 교육지원청, 학교와 교직원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권고사항을 이행하여야 하고, 조치결과를 즉시 인권옹호관과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인권옹호관의 권고내용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